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17. 4. 10.

섬유생활인증본부 섬유생활마케팅팀

CONTENTS



-
1. 주요 개정내역
 2. 적용 범위 및 관리 대상
 3. 개정 관련 업무수행
 4.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5. 별 첨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주요 개정내역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주요 개정내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하 전안법) 연혁

공산품품질관리법 <1967.3.30 제정>

- 공산품에 대한 품질표시·품질검사 및 품질관리에 대한 등급제를 실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기하려는 것

공산품품질관리법 <1986.12.31 전부개정>

- 품질표시제, 품질검사제 및 품질관리등급제 등 공산품의 품질에 관한 제도를 보완
- 우량공산품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
-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품질관리진단제도를 새로 마련**

품질경영촉진법 <1993.12.27 전부개정>

- 국제적으로 공인된 품질경영체제(ISO 9000시리즈)를 촉진하는 제도 마련
-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던 품질검사제도를 **안전위주의 검사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보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2000.12.29 전부개정>

-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를 종전에는 정부주도로 하였으나 국제기준에 맞게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변경
-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해방지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위해사실을 공표**하고 당해 **공산품을 교환·환불**하도록 하는 등의 공산품 안전검사제도를 보다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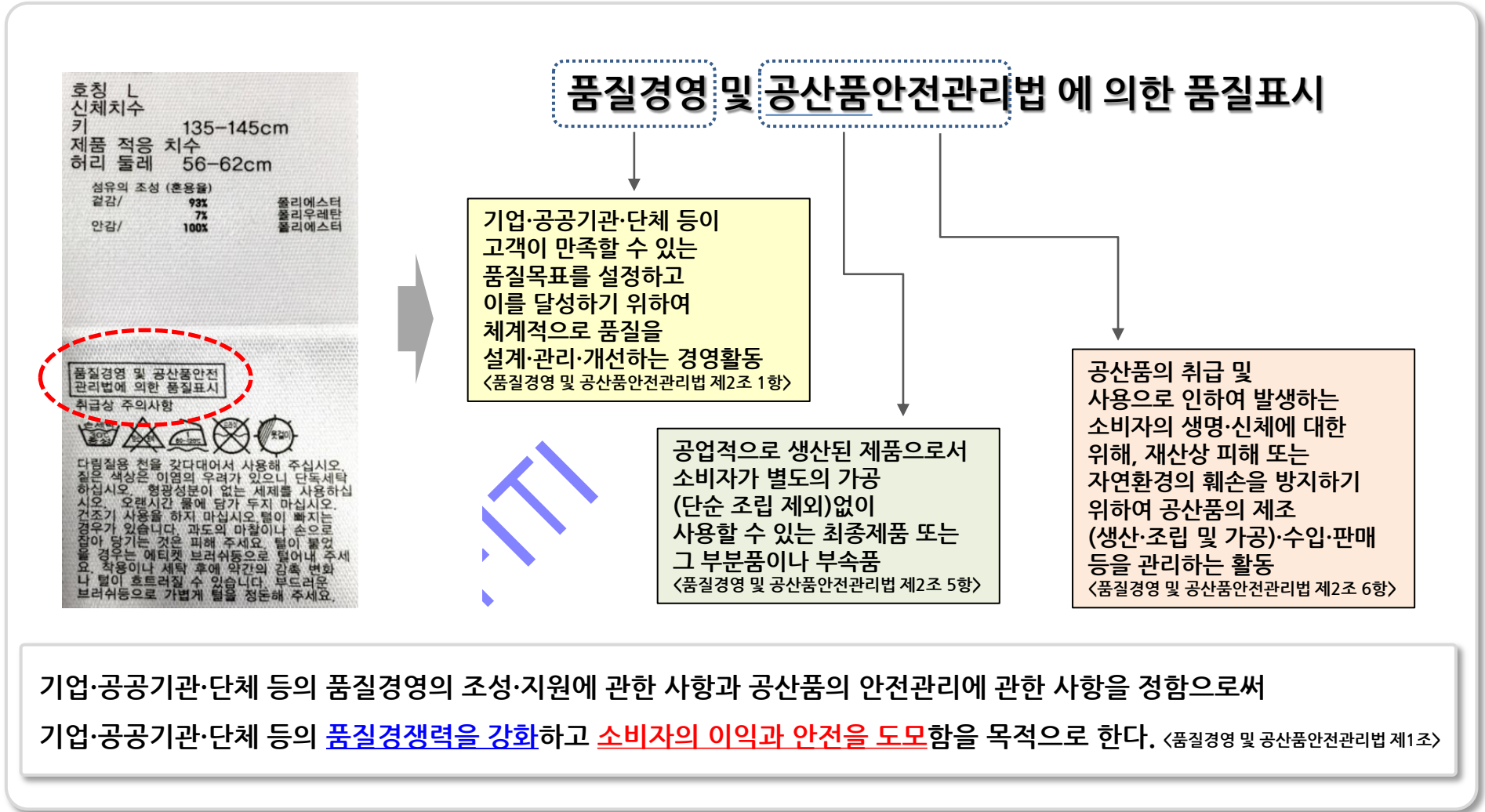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2006.12.24 전부개정>

- 공산품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제도, 안전·품질표시의무제도 도입**

➔ **국가통합 인증마크 (Korea Certification, KC), 2009년 7월 1일부 시행**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주요 개정내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연혁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주요 개정내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 개정 및 시행일

- (공포) 법률 제13859호, 2016.1.27 전부개정
- (시행) 2017.1.28

■ 개정 사유

-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전기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주요 개정내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 법 운영의 합리성 재고

· 전안법과 품공법의 차이에 따른 법 집행의 형평성과 합리성 유지 목적

구 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리 단계 용어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 / 안전·품질표시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일회성 제조자 인증가능 여부	없음	있음	있음
정기검사 주기	1년 1회	2년 1회	2년 1회
중개업자 규정	있음	없음	있음
벌칙 및 과태료 규정 (ex) 미인증 제품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주요 개정내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 법 운영의 합리성 재고

- 인증제품의 표시규정 개선을 통한 제조자/수입자 등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

구분	기존	변경
전기법	제품과(and) 포장에 인증정보 표시	전안법
품공법 (개별안전기준)	제품 또는(or) 포장에 인증정보 표시	

▶ 소형 제품의 경우 표시공간 부족으로 인증정보 표시 애로 고려

-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변경

구분	기존	변경
전기법	5~10년	전안법
품공법	5년	

▶ 대부분 제품출시 주기가 5년 이내이고, 리콜제도 도입으로 시장 사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 고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주요 개정내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 법 운영의 합리성 재고

- 인터넷을 통한 판매업자 등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 강화
 - ▶ 인터넷 판매제품 인증내역 게시 의무 규정 신설
 - ▶ 인터넷 포털사업자에게 인증제품 판매 의무 부과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 시험기관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 ▶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 신고제도 마련 (생활용품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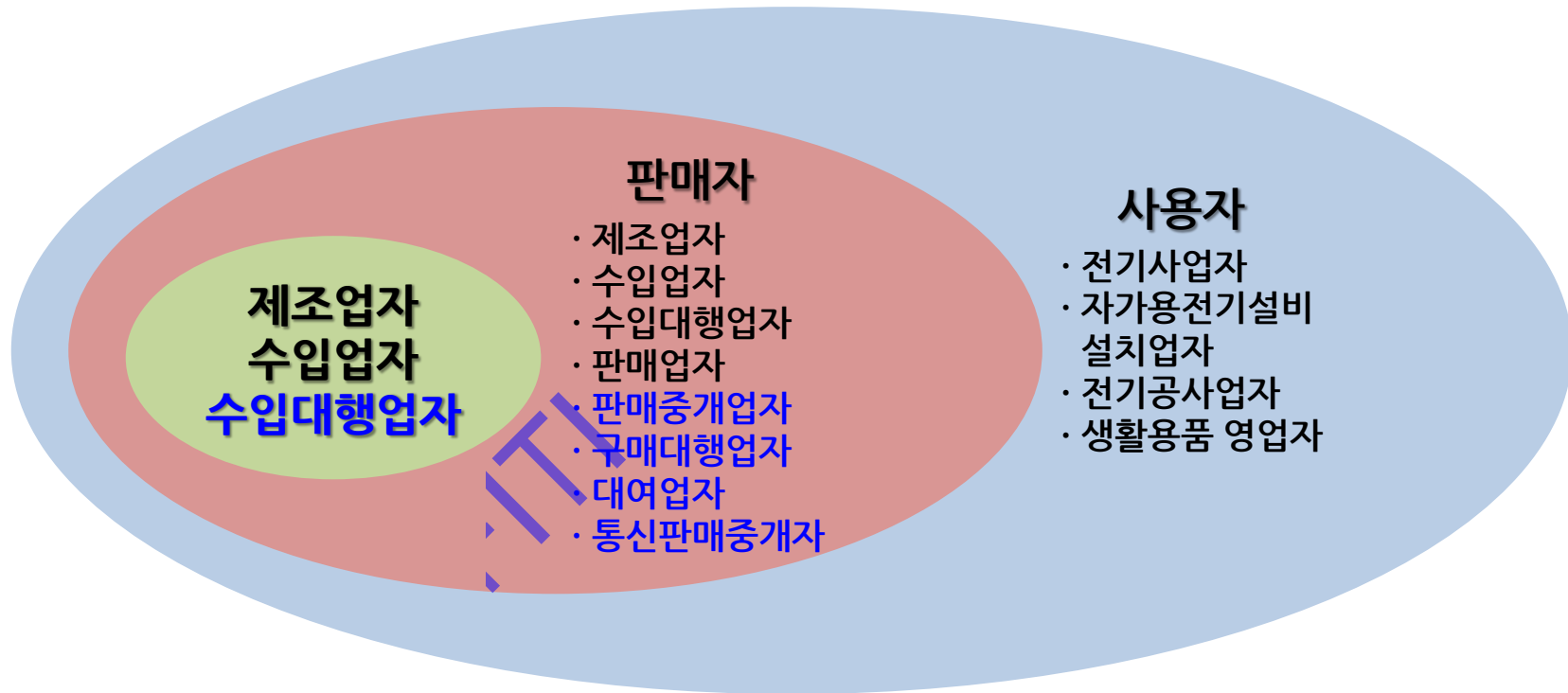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범위 및 관리 대상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범위 및 관리 대상

□ 전안법 관리 적용 범위

■ 적용 범위 세분화



[관련 조항] 동법 제9조(안전인증대상제품의 표시),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범위 및 관리 대상

□ 전안법 관리 적용 범위

■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적용례

-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부칙 <제13859호> 제3조2, (본조신설 2017.3.14)

①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제9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25조제4항)

(중략)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이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제10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안된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범위 및 관리 대상

□ 위해 정도에 따른 생활용품 분류 용어 변경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범위 및 관리 대상

□ 생활용품 관리대상 구분

구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관 리 대 상 품 목	섬유	-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2)	가정용 섬유제품 , 양탄자 (2)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1)	건전지, 부동액,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타이어 (5)	가죽제품 , 습기제거제, 화장비누, 화장지, 폴리염화비닐관, 양초 (6)
	생활용품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3)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디지털 도어록,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이륜자전거, 일회용 기저귀, 헬스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승차용안전모, 운동용안전모, 온열팩, 수유파드, 기름난로 (16)	가구, 간이빨래걸이, 안경테, 텐트, 물안경, 고령자용신발, 고령자용지팡이, 면봉, 침대매트리스,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선글라스, 킥보드,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반사안전조끼, 스테인레스 수세미, 우산 및 양산, 시각장애인용지팡이,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운동화, 창문 블라인드, 모터 달린 보드, 휴대용 경보기, 휴대용 사다리, 접촉성 금속 장신구,쌍꺼풀용 테이프, 속눈썹 열 성형기,가(假)속눈썹, 쇼핑카트 벽지 및 종이장판지,인라인롤러스케이트 (31)
	기계 금속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방지장치,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7)	빙삭기, 럽처 밸브, 안전회로기판,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7)	자동차용 휴대용 잭 (1)
	건축	-	미끄럼 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2)	물탱크 (1)
구분 기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제품	소비자의 위해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범위 및 관리 대상

□ 생활용품 관리대상 구분

구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기	출고 또는 통관 전(前)		
확인장소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기관	직접(스스로) 또는 제3자
확인방법	제품시험 + 공장검사	제품시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자체/원부자재 업체의 시험성적서, 외국의 공인기관 또는 기업의 시험성적서, 기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표시방법	 안전인증번호 :		 안전확인신고번호 :
	 KC 도안만 표시		
1.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 가능 (단,가로/세로비율은 도안과 동일하게 변경) 2.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 3. 한글 표기 원칙 4.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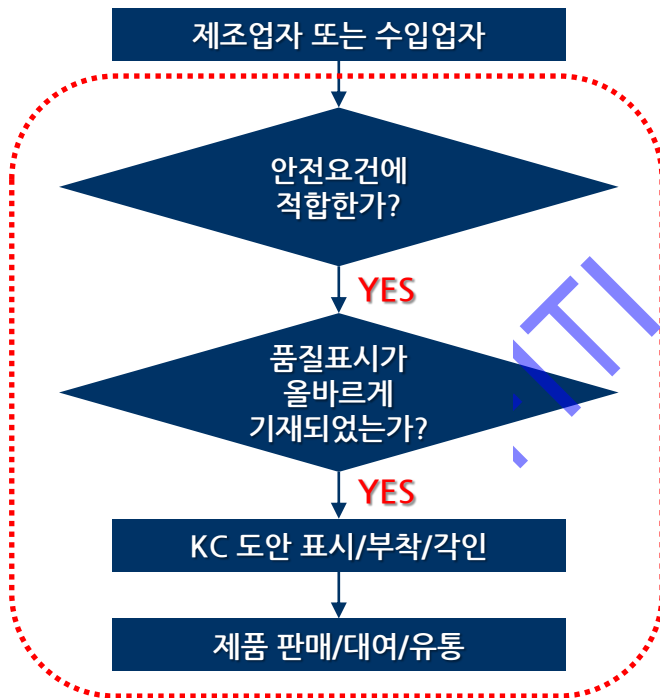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범위 및 관리 대상

□ 생활용품 관리대상 구분

자주 묻는 질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KC 인증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



※ 별도의 인증, 신고 없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①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

② **올바른 제품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품질표시 사항이 알맞은 지 확인**

→ ①, ② 항에 대한 확인이 완료된 경우 KC 도안을 스스로 표시

※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 자신의 제품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 후 판매/대여/유통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자기적합성”** 절차

■ 인증(認證)

· 어떠한 행위 또는 문서의 성립·기재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일**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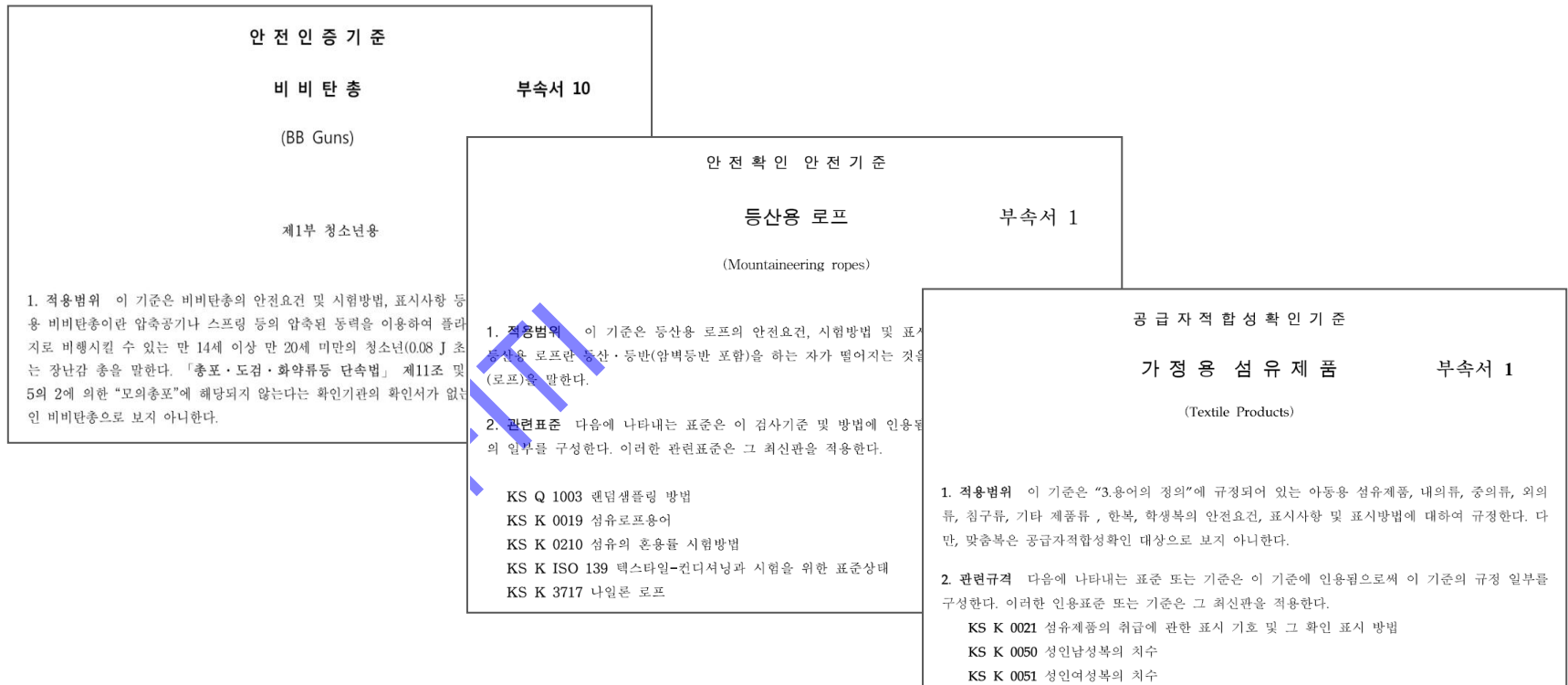
■ 신고(申告)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범위 및 관리 대상

□ 생활용품 안전기준 확인

- 전안법 관리대상에 포함된 전기/생활용품의 경우 **개별적으로 안전기준 부속서가 존재하며, 해당 부속서 내 명시된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에 따라 시험/품질표시 실시**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범위 및 관리 대상

□ 생활용품 안전기준 확인

■ (예시)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요건

4. 안전요건

4.1 유해물질 안전요건 각 구분별 섬유제품은 표 1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명	제품명	아동용 섬유제품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및 침구류
폼알데하이드 (mg/kg)		75 이하	75 이하	75 이하	300 이하
아릴아민 (mg/kg) ¹⁾		3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²⁾		0.1이하	-	-	-
유기주석화합물(mg/kg) ³⁾ -TBT (tributyltin)		1.0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 ⁴⁾		0.1이하			
방염제 ⁵⁾		사용하지 않것			
납(mg/kg) ⁶⁾		90이하	-	-	-
코드 및 조임끈 ⁷⁾		적합	-	-	-
알러지성 염료 ⁸⁾		사용하지 않것	사용하지 않것	-	-
pH ⁹⁾		4.0 ~ 7.5		4.0 ~ 7.5	4.0 ~ 9.0
니켈(Ni)의 용출량 ¹⁰⁾		0.5µg/cm ² /week이하			

- 주 1. 염색한 경우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KS K 0734에 따른다.
 2. 코팅제, 고무,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사용한 경우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표 2와 같다.
 3.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안료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나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 되지 않는다).
 4. 피혁 및 모피 등 가죽 소재가 되어 있는 부분만 적용한다.
 5. 대상물질은 TDBPP [tri(2,3-dibromopropyl) phosphate], PentaBDE[Pentabromodiphenyl ethers], OctaBDE[Octabromodiphenyl ethers]이고 방염가공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시험 방법

5.1 pH KS K ISO 3071 또는 ISO 3071 에 따른다.

5.2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KS K ISO 14184-1 또는 ISO 14184-1에 따른다.

5.3 아릴아민 함유량 KS K 0147, KS K 0734, EN 14362-1, EN 14362-2에 따른다.

5.4 프탈레이트가소제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5(어린이용 장신구의 프탈레이트가소제 시험방법)에 따른다.

5.5 유기주석화합물 함유량 KS K 0737에 따른다.

5.6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함유량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유아용 섬유제품의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함유량 시험)에 따른다.

5.7 방염제

5.7.1 PBB, PentaBDE, OctaBDE의 시험은 KS C IEC 62321에 따른다.

5.7.2 TDBPP(TRIS) 안전확인부속서 4.A(유아용 섬유제품의 방염제 시험방법)에 따른다.

5.8 납 안전확인부속서 35(어린이용 장신구의 납 시험방법)에 따른다.

5.9 코드 및 조임끈 KS K 0941, EN 14682에 따른다.

5.10 알러지성 염료 KS K 0736에 따른다.

5.11 니켈의 용출량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5.B(어린이용 장신구-니켈 용출량)에 따른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범위 및 관리 대상

□ 생활용품 안전기준 확인

■ (예시) 가정용 섬유제품 품질표시

6.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

6.1 개별 제품

6.1.1 개별제품에는 세탁을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별표 1]에 따라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자명(국내품에 한함)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및 제조국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자' 표시는 제품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품 문의처', '소비자상담실' '제조자명(국내품에 한함)', '수입자명' 또는 '판매자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6.1.2 개별제품에는 제품의 추적이 가능한 제조연월, 최초 판매시점, 로트번호, 제품의 스타일번호, 바코드 번호, QR코드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여 동제품이 언제 만들어 졌는지 객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피부 접촉이 일시적인 타올 및 직접 착용하지 않은 가방, 방석류, 모기장, 덮개, 수의 등은 자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번호를 관리하고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6.2 개별제품의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

6.2.1 개별제품의 박음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류, 런닝셔츠, 팬티류, 양말류, 장갑류, 수영복, 체조복, 스카프, 미플러, 손수건, 가발류, 모자, 기저귀류, 신발, 수의류, 타올, 넥타이, 모기장, 덮개류, 턱받이류는 6.1.1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제품의 포장, 꼬리표 또는 스티커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침낭 및 카페트는 방염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개별제품의 표시한 경우도 소비자가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개별제품의 표시도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6.2.2 동일품명으로 2 개 이상(상·하의 경우는 제외)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 포장 단위 표면에 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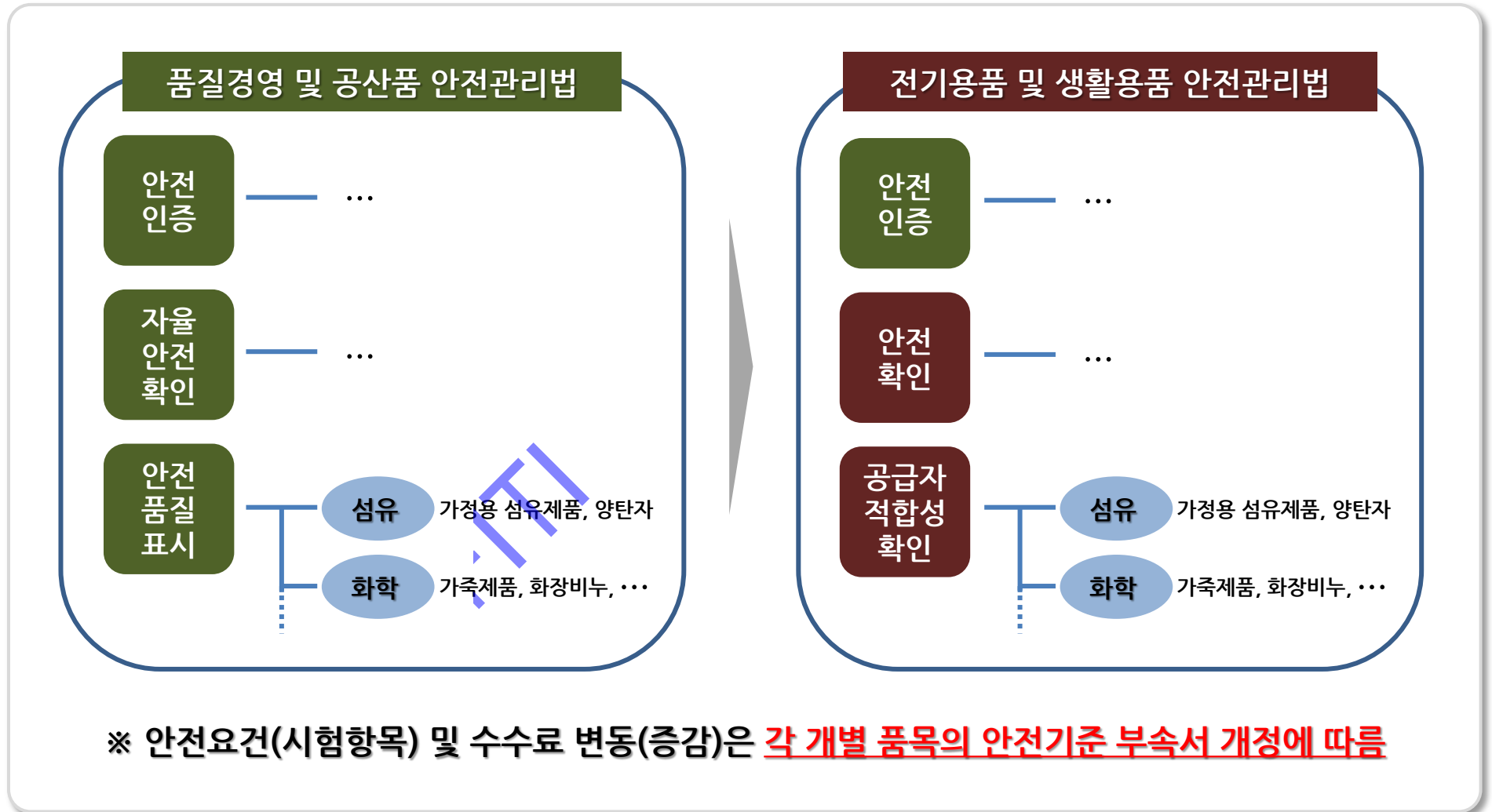
[별표 1] 개별제품별 표시사항

섬유상품	품질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 - 의의류 - 중의류 - 내의류 - 유아용 및 아동용 의류 - 학생복 - 한복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감 - 안감 - 충전제 (충전제를 사용한 제품에 한 한다) 다만, 다운제품은 솜털 (다운), 깃털 (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로 표기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점,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5. 치수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 이외의 섬유제품 - 이불 및 요 - 모포 - 침낭 - 카페트 - 방석류 - 쿠션류 - 신발류 - 솜, 가방, 커튼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감 - 안감 - 충전제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제 명기. 다만 다운제품은 솜털 (다운), 깃털(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 표기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점,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5. 치수(솜, 가방, 커튼 등 일부제품은 생략)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주)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범위 및 관리 대상

□ 생활용품 안전기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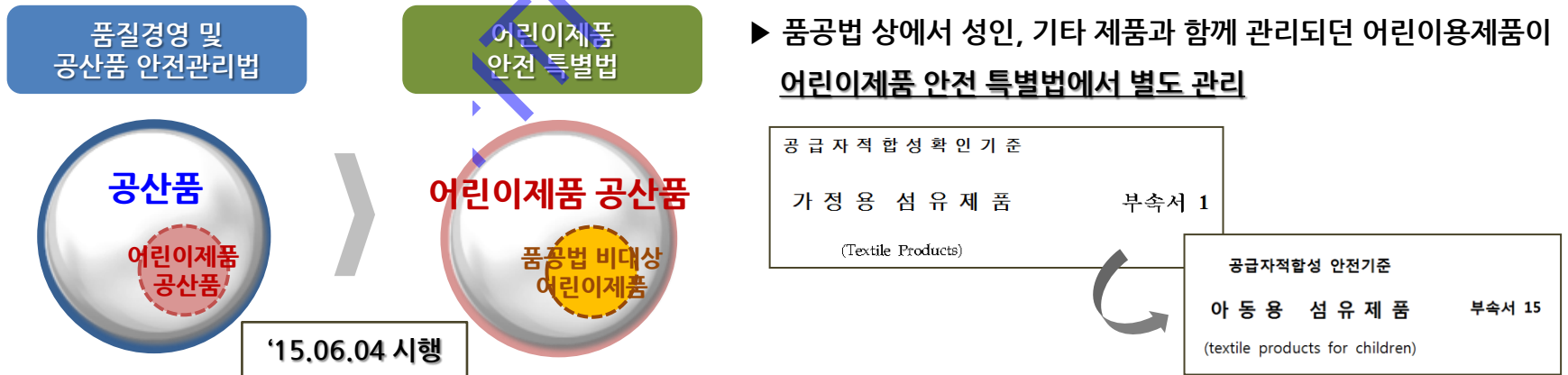
※ 안전요건(시험항목) 및 수수료 변동(증감)은 **각 개별 품목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에 따름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범위 및 관리 대상

□ 기타 안전기준 확인방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8항, 제16조제6항, 제24조제4항에 명시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성 인정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22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25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관련 업무수행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관련 업무수행

□ 품질표시 문구 변경

※ 각 품목별 “품질표시 문구”에 대한 법령명 변경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 ①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겉감 나일론 100%
안감 폴리에스터 100%
충전재 폴리에스터 100%
- ②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XXX 유통
- ③ 제조국명 중국
- ④ 제조연월 또는 스타일번호
- ⑤ 치수 XL
- ⑥ 주소 00시 00구 00로 568
- ⑦ 전화번호 02) 123-4567
- ⑧ 취급상 주의사항
- 제품에 적합한 내용을 물세탁 또는 드라이크리닝 방법 등을 포함 4종류 이상을 한글 또는 기호(KS K 0021)로 표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 ①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겉감 나일론 100%
안감 폴리에스터 100%
충전재 폴리에스터 100%
- ②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XXX 유통
- ③ 제조국명 중국
- ④ 제조연월 또는 스타일번호
- ⑤ 치수 XL
- ⑥ 주소 00시 00구 00로 568
- ⑦ 전화번호 02) 123-4567
- ⑧ 취급상 주의사항
- 제품에 적합한 내용을 물세탁 또는 드라이크리닝 방법 등을 포함 4종류 이상을 한글 또는 기호(KS K 0021)로 표시

생략가능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관련 업무수행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 ④ 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 관련 서류 비치)

-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생활용품의 경우 제2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를 제외한다)**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 (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공급자적합성확인서 외 비치 서류

1. 제품설명서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시료사진을 포함한다).

- 라.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 마.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 바.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관련 업무수행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TEST REPORT

의뢰자: (주)엘프상사
 제출처: 삼성물산(주) 곡선부품
 시험명: DRESSING-PECE

접수번호: K231-16-0456
 접수일자: 2016-04-12
 발급일자: 2016-04-18
 쪽번호: 1/6

스판번호: EP6771U01, EP6725U01, EP6721U02, EP6739U01, EP6737U02
 제품종류: 종이틀(메지,지,틀(캐스))
 제품내역: 10종
 COLOR NAME: #1 QFNORY, #2 AJBEJG, #3 BEYELLOWISH BROWN, #4 HJHHAAL, #5 RJNNAVY

항목	(A)	(B)	(C)	(D)	(E)
시험결과	무적합	무적합	무적합	무적합	무적합

※ 본서 확인 번호: Z492-4345-PPEB ※
 (종이이외 접수 후 "보조서확인" 메뉴에서 문서 확인 번호를 통해 위 번호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결과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TEST REPORT

의뢰자: (주)엘프상사
 제출처: 삼성물산(주) 곡선부품
 시험명: DRESSING-PECE

접수번호: K231-16-0456
 접수일자: 2016-04-12
 발급일자: 2016-04-18
 쪽번호: 1/6

스판번호: EP6771U01, EP6725U01, EP6721U02, EP6739U01, EP6737U02
 제품종류: 종이틀(메지,지,틀(캐스))
 제품내역: 10종
 COLOR NAME: #1 QFNORY, #2 AJBEJG, #3 BEYELLOWISH BROWN, #4 HJHHAAL, #5 RJNNAVY

항목	(A)	(B)	(C)	(D)	(E)
시험결과	무적합	무적합	무적합	무적합	무적합

※ 본서 확인 번호: Z492-4345-PPEB ※
 (종이이외 접수 후 "보조서확인" 메뉴에서 문서 확인 번호를 통해 위 번호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결과서]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간주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회사명(국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간주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품명	제품명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제품	기본모델명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모델명	적용안전기준

상기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합니다.

2016년 04월 18일

■ 본서 발급 후 생활용품 안전시험부 시험규칙 (별첨 제20호)에서 <개정 2016.05.20>

[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품 설명서

1. 일반사항

<제품사진 - 용의인 이미지 >

2. 원부지정별 제품상세정보(예: 금속, 고분자, 프라스틱, 원단형, 코팅, 가죽, 기타 재질)

메인부-다한재	금속부		
---------	-----	--	--

3. 모델의 구분 및 표시사항

모델의 구분	외의분(원피스)
섬유외 조성 또는 혼용률	면 50 %, 폴리에스터 30 %, 폴리우레탄 20 %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OODO, 공창영
제조국명	대한민국 경기도 OOSI, 중국(대사어)
제품명	최초판매시점, 최초 번호, 제품외 소와탈번호, 바코드 번호, QR코드 등 기타 표시
제조연월	2015. 03.
가수(명장사할)	80
취급상 주의사항	Washing, Ironing, Drying, Bleaching, Tumble Drying icons
표시자료: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용두동구 정릉향동로 102(경기동: 02-0000-0000)

[제품설명서]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관련 업무수행


비치 서류

- ▶ 서류 ① - 시험결과서 (사진포함)
- ▶ 서류 ② - 제품설명서
- ▶ 서류 ③ - 공급자적합성확인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 FITI시험연구원은 전안법 시행에 따라 '17.3.7 이후 KC 안전요건이 포함된 시험결과서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행

- ① 시료사진 (완제품, 원부소재)
- ②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 ③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 ④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05071)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192
 Tel : 02-6931-8459-8460 Fax : 02-498-8491

TEST REPORT

의뢰자 : (재)FITI 시험연구원
 제출처 : ABC COMPANY
 시료명 : 직물

접수번호 : F231-17-XXXXX
 접수일자 : 2017-XX-XX
 발급일자 : 2017-XX-XX
 쪽번호 : 1/X

스타일번호 : ABC-123

제품분류 : 중의류

세부내역 : COLOR NAME : #1 WHITE, #2 KHAKI

	(#1)	(#2)
판정결과	부적합	적합

* 판정기준 : 1. 국가기술표준원고서 제 2017-0033 호,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 부속서 1 가정용섬유제품
2. ABC COMPANY 품질관리 메뉴얼

* 시험항목별 세부 판정 결과 첨부 참조

** 다음페이지 계속 **

확인
 소속 : 고객지원 1팀
 성명 : 양재승

양재승




FITI 시험연구원장

※ 문서 확인 번호 : XXXX-XXXX-XXXX ※
 (홈페이지 접속 후 "성적서확인"메뉴에서 문서 확인 번호를 통해 입,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DOCUMENT SERVICE


이 성적서는 제시된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서 전체제출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 않으며, 시료명은 의뢰자가 제시한 명칭입니다.
 이 성적서는 FITI와 사진 서면 등의 없이 홍보, 선전, 광고 및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이 성적서는 KOLAS 인정과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05071)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192
 Tel : 02-6931-8459-8460 Fax : 02-498-8491

접수번호 : F231-17-08216
 쪽번호 : 2/X

①




②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표시사항	표시기준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7. 세부표시 방법에 따른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점,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지수(권장사항)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성적서는 제시된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서 전체제출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 않으며, 시료명은 의뢰자가 제시한 명칭입니다.
 이 성적서는 FITI와 사진 서면 등의 없이 홍보, 선전, 광고 및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이 성적서는 KOLAS 인정과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섬유생활인증본부 섬유생활마케팅팀 |  FITI 시험연구원
 FITI Testing & Research Institute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관련 업무수행

비치 서류

- ▶ 서류 ① - 시험결과서 (사진포함)
- ▶ **서류 ② - 제품설명서**
- ▶ 서류 ③ - 공급자적합성확인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제 품 설 명 서

1. 일반사항
 <제품사진 - 컬러이미지 >




(앞) (뒤)

2. 원·부자재별 제품상세정보(예, 금속, 고분자, 프린팅, 페인팅, 코팅, 가죽, 기타 재질)

페인트·파란색	금속단추		
			

3. 모델의 구분 및 표시사항

모델의 구분	외의류(원피스)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면 50 %, 폴리에스터 30 %, 폴리우레탄 20 %
제조사명 또는 수입자명	OOOOO 공장명
제조국명	대한민국 경기도 OO시, 중국(아시아)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트트번호, 제품의 스타일번호, 바코드 번호, QR코드 중 하나 표시	2015. 03.
치수(권장사항)	80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02(계기동), 02-0000-0000

F0102P-011-05

- ① 지정된 양식 없음 (단, 제품 사진 포함)
- ②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사항 기입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관련 업무수행

비치 서류

- ▶ 서류 ① - 시험결과서 (사진포함)
- ▶ 서류 ② - 제품설명서
- ▶ 서류 ③ - 공급자적합성확인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서 ②

확인자	회사명 (재)FITI시험연구원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대표자 홍길동	전자우편 abc@fitiglobal.com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02	전화번호/팩스번호 02-123-4567 / 02-456-7890
제조업자	회사명 (재)FITI시험연구원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대표자 홍길동	전자우편 abc@fitiglobal.com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02	전화번호/팩스번호 02-123-4567 / 02-456-7890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제품	제품명 가정용 섬유제품	제품정격
	기본모델명 ABC-123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피부 직접 접촉제품
	파생모델명 DEF-456, GHI-789, JKL-012, MNO-345	적용안전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1 가정용 섬유제품

상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③

XXXX 년 XX 월 XX 일

확인자 이순신 (서명 또는 인)

① 첨부서류

1. 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험결과서(정격, 전기회로 도면, 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제품시험자의 성명과 소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서는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생활용품)]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와
함께 협회의 장에게 신고 (생활용품 제외)

※ 공급자적합성확인서의 경우 전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임의로 수정/변경 불가

①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② 확인자 및 제조업자

▶ 국내 제조업자인 경우 : 확인자 및 제조업자

▶ 수입업자인 경우 : 확인자

(제조업자란에는 실제 제조업자의 정보 기재)

③ 확인일시 및 서명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관련 업무수행

비치 서류

- ▶ 서류 ① - 시험결과서 (사진포함)
- ▶ 서류 ② - 제품설명서
- ▶ **서류 ③ - 공급자적합성확인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서

확인자	회사명 (재)FITI시험연구원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대표자 홍길동	전자우편 abc@fitiglobal.com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02	전화번호/팩스번호 02-123-4567 / 02-456-7890
제조업자	회사명 (재)FITI시험연구원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대표자 홍길동	전자우편 abc@fitiglobal.com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02	전화번호/팩스번호 02-123-4567 / 02-456-7890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제품	제품명 가정용 섬유제품	제품정격
	기본모델명 ABC-123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피부 직접 접촉제품
	파생모델명 DEF-456, GHI-789, JKL-012, MNO-345	적용안전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1 가정용 섬유제품

상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XXXX 년 XX 월 XX 일

확인자 **이순신**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 시험결과서(정격, 전기회로 도면, 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제품시험자의 성명과 소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서는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생활용품)]

① 제품명

- 부속서에 대한 **제품명**을 기재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의 제품명 기재 **ex) 가정용 섬유제품**

② 제품정격

- 생활용품의 경우 기재할 필요없이 공란으로 비워둘 것

③ 기본모델명

- 모델 중 표본적으로 공급자적합확인을 실시한 모델명 기재 (자유 기재)

④ 파생모델명

- 동일 모델 중 기본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 (자유 기재)

⑤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제조자 제시 모델명

- 각 제품의 부속서에서 정의하는 “모델 구분” 사항 기재
- 모델 구분이 없는 제품의 경우 공란으로 비워둘 것

⑥ 적용안전기준

- 해당 생활용품에 대한 개별안전기준(부속서) 부속서명을 기재
- ex)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관련 업무수행

비치 서류

- ▶ 서류 ① - 시험결과서 (사진포함)
- ▶ 서류 ② - 제품설명서
- ▶ 서류 ③ - 공급자적합성확인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별지 양식

확인자	회사명 (재)FITI시험연구원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대표자 홍길동	전자우편 abc@fitiglobal.com
제조업자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02	전화번호/팩스번호 02-123-4567 / 02-456-7890
	회사명 (재)FITI시험연구원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제품	대표자 홍길동	전자우편 abc@fitiglobal.com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02	전화번호/팩스번호 02-123-4567 / 02-456-7890
제품명	가정용 섬유제품	제품정격
	기본모델명 ABC-123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피부 직접 접촉제품
파생모델명 DEF-456, GHI-789, JKL-012, MNO-345	적용안전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1 가정용 섬유제품

상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XXXX 년 XX 월 XX 일

확인자 **이순신**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험결과서(정격, 전기회로 도면, 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제품시험자의 성명과 소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서는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생활용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별지 양식

확인자	회사명 (재)FITI 시험연구원	사업자등록번호 206-82-XXXXX
	대표자 윤성광	전자우편 fiti@fitiglobal.com
제조업자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64	전화번호 02-3299-8000
	회사명 (재)FITI 시험연구원	사업자등록번호 206-82-XXXXX
공급자적합성 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대표자 윤성광	전자우편 fiti@fitiglobal.com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64	전화번호 02-3299-8000
제품명	어린이제품명 아동용 섬유제품	제품정격
	안전기준 상의 모델구분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제조자 제시 모델명	1. 제품명 : 셔츠	적용안전기준
	2. Style No. : abc1234567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3. 제품세분류 : 의류 완제품	4. 컬러명 : NAVY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

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25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0 조제 2 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XXXX 년 XX 월 XX 일

확인자 **담당자명** (서명 또는 인)

*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는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한정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생활용품)]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관련 업무수행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유예사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서류 보관에 관한 특례)

- 법 시행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고 또는 통관되는 공급자적합성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제품설명서**만을 보관할 수 있다. 부칙 <제238호, 2017.1.26>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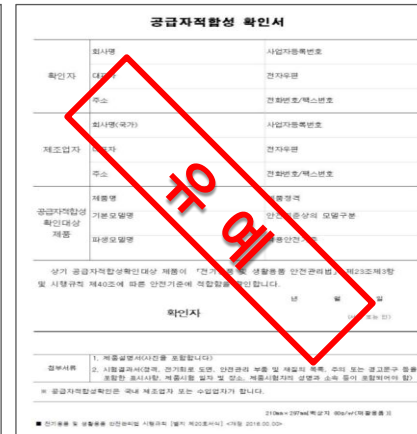


[시험결과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험결과서]



[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품설명서]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관련 업무수행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유예사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의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례)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3859호, 2017.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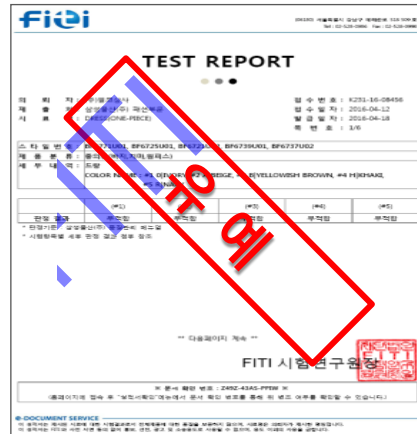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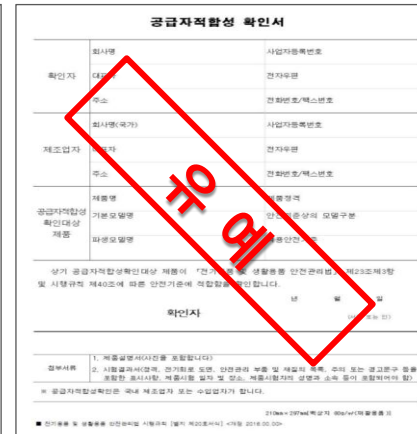


[시험결과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험결과서]



[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품설명서]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관련 업무수행

□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① 안전인증(법 제9조 1항 각 호의 구분), 안전확인(법 제18조 1항 각 호의 구분), 공급자적합성확인(법 제25조 1항 각 호의 구분)의 요구 내역에 따른 표시방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과 같다.

② 법 제25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대상 (법 제9조 3항, 법 제18조 3항, 법 제25조 3항)

- 제조업자 · 수입업자 · 수입대행업자 · 판매업자 · 판매중개업자 · 구매대행업자 · 대여업자 ·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 해당 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법 제25조 3항)

가) 별표 8 제1호 가목에 따른 도안 (= KC도안)



안전인증번호 :

안전확인신고번호 :

- 도형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 가능하되 가로, 세로 비율은 도안과 동일하게 변경 가능
-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
-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 가능

나) 안전인증번호(안전인증 제품 限), 안전확인신고번호(안전확인 제품 限)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관련 업무수행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관련 정보 게시에 관한 특례)

- 법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고 또는 통관되는** 공급자적합성생활용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만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2017.12.31 까지

점검항목	예시 내역
KC 표시	(現, 생략 가능)
제품명	가정용 섬유제품
모델명	ABC-123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재)FITI시험연구원

2018.1.1 이후

점검항목	예시 내역
KC 표시	 안전인증번호: 안전확인신고번호:
제품명	가정용 섬유제품
모델명	ABC-123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재)FITI시험연구원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 벌칙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자 (제1항 27호)
-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자 (제1항 28호)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고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할 경우 (제1항 29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자 (제2항 3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자 (제3항 6호)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 양벌규정 및 과태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반하여 제40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제2항 13호)
-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제2항 14호)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제2항 15호)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제2항 16호)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제2항 17호)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기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가중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 계산방법 :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 ~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 기준

②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 *①항에 따른 기간 내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의미

③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해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및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거.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갖추어둔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42조 제2항 제12호	150 130 100 80 50	170 150 120 100 70	200 180 150 130 100
너.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42조 제2항 제13호	130 100 80 50 30	260 200 160 100 60	390 300 240 150 90
더.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42조 제2항 제14호	130 100 80 50 30	260 200 160 100 60	390 300 240 150 90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및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러.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 제15호			
1)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350	4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50	300	35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200	250	30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50	200	2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150	200
2)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및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증대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42조 제2항 제16호	150	170	200
버.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을 사용한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42조 제2항 제17호	150	170	200
		130	150	180
		100	120	150
		80	100	130
		50	70	100

5. 별첨



별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주요 용어 정리

용어	의미
생활용품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 별도의 가공(단순 조립 제외)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
제조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
제품시험	제품 자체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것
공장심사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는 것
모델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
기본모델	전기용품분류별 모델구분 및 생활용품분류별 모델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분류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모델
파생모델	전기용품분류별 모델구분 및 생활용품분류별 모델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분류 중에서 기본모델을 제외한 모델
안전인증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
안전확인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
공급자적합성확인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

별첨) 품목별 안전기준 부속서 열람방법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 <http://www.kats.go.kr>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KATS). The main navigation menu includes: 소개 (Introduction), 소식 (News), 정책 (Policy), 정보 (Information), and 민원 (Public Inquiry). The main banner features the text: "국가표준·제품안전·시험인증·기술규제대응, 국가기술표준원이 선도합니다." (National Standards, Product Safety, Testing Certification, and Technical Regulation Response, led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Below the banner is a horizontal menu with icons for: 국가표준 (National Standards), 국제표준협력활동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Cooperation Activities), 기술규제대응 (Technical Regulation Response), **제품안전** (Product Safety), 인정기구 (Recognized Bodies), 평가·인증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and 법정계량 (Legal Metrology). The '제품안전' item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Below this menu is a section for '공지사항' (Notice) with a list of recent notices and their dates. At the bottom, there is a footer with icons for: 민원신청 (Public Inquiry Application), 정책자료 (Policy Materials), 관련법령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KS 열람 (KS Access), 안전기준열람 (Safety Standard Access), 발간물 (Publications), and 계량박물관 (Metrology Museum). A red callout box with white text says: "홈페이지 접속 후 배경화면 중앙에 위치한 '제품안전' 클릭" (Click 'Product Safety'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background after accessing the homepage).

별첨) 품목별 안전기준 부속서 열람방법

www.kats.go.kr/content.do?cmsid=51

국가기술표준원 *희망 새시대*

소개 | 소식 | 정책 | 정보 | 민원

정책

생활용품

② 관리 대상 선택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어린이보호포장 | 관련법령

제품안전정보포털 바로가기 <<

① 확인하고자 하는 품목을 선택

- 제품안전
 - 제품안전관리제도
 - 제품안전기본법
 - 전기용품**
 - 생활용품
 -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

▶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시면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분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41품목)
섬유	가정용 섬유제품(접촉성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방한사
화학	가죽제품 습기제거제 화장비누 화장지

③ 세부 품목명 선택

별첨) 품목별 안전기준 부속서 열람방법

kats.go.kr/content.do?cmsid=527&page=1&sf_cat1=CWS486&cat1_0=CWS486&sf_cat2=CWS491

홈 | 사이트맵

국가기술표준원 *희망의 새시어*

소개 | 소식 | 정책 | 정보 | 민원

정책

국가표준

국제표준협력활동

제품안전

- 제품안전관리제도
- 제품안전기본법
- 전기용품
- 생활용품
- 어린이제품
- 안전기준열람

인정제도

평가인증

법정계량

기술규제대응

안전기준열람

[전기용품안전기준](#)
[생활용품안전기준](#)
[어린이제품안전기준](#)

제품안전정보포털 바로가기 <<

생활용품안전기준

> 검색조건

구분	분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공급자적합성확인	섬유	양탄자	지민호	2017-02-10	254
공급자적합성확인	섬유	가경용 섬유제품			338

세부 품목명 선택

별첨) 품목별 안전기준 부속서 열람방법

kats.go.kr/content.do?cmsid=527&sf_cat1=CWS486&cat1_0=CWS486&sf_cat2=CWS491&mode=view&page=1&cid=19159

국가기술표준원 *희망의 새시어*

홈 | 사이트맵

소개 | 소식 | 정책 | 정보 | 민원

정책

안전기준열람

국가표준

국제표준협력활동

제품안전

- 제품안전관리제도
- 제품안전기본법
- 전기용품
- 생활용품
- 어린이제품
- 안전기준열람

인정제도

평가인증

법정계량


전기용품안전기준

생활용품안전기준

어린이제품안전기준

제품안전정보포털 바로가기 <<

○ 생활용품안전기준

기준번호	제목	가정용 섬유제품
▶ 담당자	지민호	담당부서
▶ 구분	공급자적합성확인	
분야	섬유	
첨부파일	 [별첨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_국가기술표준원고시_제2017-033호(2017.2.8).hwp	
내용		

첨부파일명 선택
 ※ 주의사항 : 한글(hwp) 파일이므로
 별도 뷰어(viewer)나 프로그램 설치 필요

별첨) FITI시험연구원 지정 품목

FITI시험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fiti.re.kr>

전안법 안전인증 대상 지정 품목

분야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시료수	시험소요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금속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용기내 합성수지 도장제품)	3개 이상	7일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합성수지제품 제외)	3개 이상	7일
생활용품	비비탄총	4개 이상	7일

※ 경로 : 홈페이지 배경화면 → 업무안내 → Service By Type (인증) → 0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KC) → 안전인증



별첨) FITI시험연구원 지정 품목

FITI시험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fiti.re.kr>

전안법 안전확인 대상 지정 품목

분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시료수	시험소요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섬유	등산용 로프	1개 이상 (길이 20m 이상)	7일	
	스포츠용 구명복 (성인용)	8개 이상	35일	
토건	실내용 바닥재	5m x 5m 이상	7일	
생활용품	일회용 기저귀 (성인용)	1팩 이상	7일	
	온열팩 (성인용)	15개 이상	10일	
	수유파드	1팩 이상	7일	
	스노보드	보드	4개 (삽입물이 있는 스노보드) 5개 (보강재 없는 스노보드)	10일
		부츠 (알파인용)	2쌍	10일
	스키용품	바인딩	5쌍 (현장시험 진행 시 보드/바인딩 각 4쌍 추가 필요)	10일
		스키	3쌍	10일
		스키화	4쌍 (동일모델의 동일 사이즈 2쌍 + 각기 다른 사이즈 2쌍)	20일
스키바인딩		3쌍 + 의뢰한 바인딩에 맞는 스키 3쌍 (현장시험 진행 시 스키/바인딩 각 4쌍 추가 필요)	15일	

※ 경로 : 홈페이지 배경화면 → 업무안내 → Service By Type (인증) → 0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KC) → 안전확인

별첨) FITI시험연구원 지정 품목

FITI시험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fiti.re.kr>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안전인증 대상 지정 품목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적용안전기준	시료수	시험소요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물놀이기구 안전기준	4개 이상	10일
어린이용 비비탄총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비비탄총 안전기준	4개 이상	10일

※ 경로 : 홈페이지 배경화면 → 업무안내 → Service By Type (인증) → 0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법 (KC) → 안전인증



별첨) FITI시험연구원 지정 품목

FITI시험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fiti.re.kr>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안전확인 대상 지정 품목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적용안전기준	시료수	시험소요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물놀이기구 안전기준	2개 이상	5~9일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1부만 해당)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2개 이상	10일
완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완구 안전기준	2개 이상	7~10일
어린이용 일회용기저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일회용기저귀 안전기준	1팩 이상	5일
학용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학용품 안전기준	종류에 따라 2개~5개	10일
보행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보행기 안전기준	2개 이상	10일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온열팩 안전기준	15개 이상	10일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캐리어 안전기준	2개 이상	10일
어린이용 스포츠구명복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스포츠구명복 안전기준	4개 이상	35일

※ 경로 : 홈페이지 배경화면 → 업무안내 → Service By Type (인증) → 0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법 (KC) → 안전확인

별첨) FITI시험연구원 지정 품목

FITI시험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fiti.re.kr>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지정 품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적용안전기준	시료수	시험소요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완제품(의류) : 1벌 이상 완제품(신발) : 2켢레 이상 완제품(가방) : 1개 이상 원자재 : 0.5미터 이상 부자재 : 개별 문의 요망	4~10일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	완제품(의류) : 1벌 이상 완제품(신발) : 2켢레 이상 완제품(가방) : 1개 이상 원자재 : A4 size 2장 이상 부자재 : 개별 문의 요망	4~10일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기준	완제품 : 3~4개 이상	4~10일
어린이용 면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봉하지 않은 상태의 완제품 3팩 이상	10일 이상
어린이용 안경테 (선글라스 포함)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안전기준	완제품 : 4개 이상	4~10일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안전기준	완제품 : 3개 이상	4일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개별 문의 요망	개별 문의 요망

※ 경로 : 홈페이지 배경화면 → 업무안내 → Service By Type (인증) → 0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법 (KC) → 공급자적합성확인

별첨) FITI시험연구원 지정 품목

FITI시험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fiti.re.kr>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지정 품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적용안전기준	시료수	시험소요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기타 어린이제품은 별도의 개별안전기준(부속서)이 없으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및 물리적 안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품목예시 : 어린이용 서적, 미술용품, 어린이용 운동용품, 약기류, 팬시용품, 위생용품, 게임기류, 기능성편리용품, 기타 신제품 등)		의뢰품목에 따라 시료수 및 검사소요일이 달리지게 되므로 개별 문의 요망	

※ 경로 : 홈페이지 배경화면 → 업무안내 → Service By Type (인증) → 0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법 (KC) → 공급자적합성확인



별첨)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 (시행규칙 별표 2)

분류		모델구분	
가. 화학	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 종류	
나. 생활	1) 가스라이터	○ 종류 ○ 형식 ○ 구조 (불꽃놀이 조절방식, 연료탱크 용적, 외형) ○ 재질	
	2) 물놀이기구	가) 제1부 :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 종류 ○ 모양 ○ 크기 ○ 재질
		나) 제2부 : 공기주입 보트	○ 종류 (인원 수) ○ 모양 ○ 크기 ○ 재질
		다) 제3부 : 수영보조용품(착용형)	○ 종류 ○ 모양 ○ 크기(연령) ○ 재질
		라) 제4부 : 수영보조용품(비착용형)	○ 모양 ○ 크기(연령) ○ 재질

분류		모델구분	
나. 생활	3) 비비탄총	가) 청소년	○ 모양
		나) 성인	○ 모양 ○ 재질
다. 기계금속	1) 조속기	○ 종류 ○ 정격속도	
	2) 비상정지장치	○ 종류 ○ 정격속도 ○ 적용중량	
	3) 완충기	○ 종류 ○ 정격속도 ○ 적용중량	
	4)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 종류 ○ 정격속도 ○ 적용하중	
	5) 승강장 문 잠금장치 (카문잠금장치 포함)	○ 종류 ○ 정격전압 ○ 정격전류	
	6)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 종류 ○ 충고	
	7)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내부용기 재질 ○ 구조 ○ 압력조정 장치 기구 ○ 안전장치 기구	

비고 : 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의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첨)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 (시행규칙 별표 2)

분류		모델구분
가. 화학	1) 건전지	○ 종류
	2) 부동액	○ 종류
	3)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 종류
	4) 자동차용 워셔액	○ 종류
	5) 자동차용 타이어	○ 용도 ○ 구조
나. 생활	1)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 종류 ○ 재질 ○ 모양
	2) 고령자용 보행차	○ 종류 ○ 재질 ○ 모양
	3) 디지털도어록	○ 종류
	4)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 종류
	5) 스노보드	○ 종류
	6) 스케이트 보드	○ 종류 ○ 재질 ○ 모양
	7) 스키용구	○ 종류

분류		모델구분	
나. 생활	8) 이륜자전거	가) 제1부 일반용 자전거	○ 프레임 재질 ○ 프레임 형태
		나) 제2부 산악용 자전거	○ 프레임 재질 ○ 프레임 형태
		다) 제3부 전기 자전거	○ 구동방식 ○ 전지종류 ○ 프레임 재질 ○ 프레임 형태
	9) 일회용 기저귀		○ 종류
	10) 헬스기구	가) 제1부 고정식 운동기구	○ 정확도 ○ 구동방식 ○ 운동부위 ○ 사용용도
		나) 제2부 벤치 프레스	○ 정확도 ○ 사용용도
		다) 제3부 러닝머신	○ 정확도 ○ 사용용도
		라) 제4부 고정식 자전거	○ 정확도 ○ 사용용도
		마) 제5부 스텝퍼	○ 정확도 ○ 사용용도
		바) 제6부 로잉머신	○ 사용용도
사) 제7부 운동용 슬라이더		○ 사용용도	

별첨)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 (시행규칙 별표 2)

분류		모델구분	
나. 생활	11) 휴대용 레이저용품	○ 종류	
	12) 승차용 안전모	가) 제1부 안전모	○ 종류 ○ 모양 ○ 크기 ○ 재질
		나) 제2부 승차용 눈 보호구	○ 종류 및 모양 ○ 재질 ○ 투시부의 색상
	13) 운동용 안전모	가) 제1부 자전거·볼러스포츠용	○ 종류 ○ 재질 ○ 모양
		나) 제3부 등산용	○ 종류 ○ 재질 ○ 모양
		다) 제4부 스키용	○ 종류 ○ 재질 ○ 모양
		라) 제5부 야구용	○ 종류 ○ 재질 ○ 모양
	14) 온열팩	○ 종류	
	15) 수유패드	○ 종류 ○ 주요재질	
	16) 기름난로	○ 연소방식 ○ 통기방식	

분류		모델구분	
다. 기계금속	1) 빙삭기	○ 재질 ○ 용량	
	2)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가) 제1부 휴대용 예초기의 날	○ 종류 ○ 재질 ○ 모양
		나) 제2부 보호덮개	○ 형태 ○ 용도 ○ 사용환경
	3)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 종류 ○ 정격속도 ○ 적재하중	
	4)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 종류 ○ 정격전류	
	5) 럽쳐밸브	○ 종류 ○ 밸브크기	
	6)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 종류 ○ 공칭폭	
	7)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 종류 ○ 일반용 ○ 상업용	
	8)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 종류 ○ 공칭폭	
	9) 와이어로프	○ 소신강도 ○ 로프지름	
10) 안전회로기판	○ 종류 ○ 전압종류 (교류, 직류)		

별첨)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 (시행규칙 별표 2)

분류		모델구분
라. 섬유	1) 등산용 로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 ○ 종류 ○ 재료의 조성 또는 혼용률
	2) 스포츠용 구명복(부력 보조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 (부력, 부력방식) ○ 재질
마. 건축	1) 미끄럼 방지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칭명 ○ 소재의 질 ○ 조합 ○ 유약의 유무
	2) 실내용 바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질

비고 :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의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첨)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

분류		모델구분
가. 화학	1) 가죽제품	○ 피부접촉
	2) 습기제거제	-
	3) 화장비누	-
	4) 화장지	○ 용도
	5) 폴리염화비닐관	-
	6) 양초	-
나. 생활	1) 가구	-
	2) 간이빨래걸이	-
	3) 면봉	-
	4) 선글라스	-
	5) 안경테	-
	6) 텐트	○ 종류
	7) 고령자용 신발	-
	8) 고령자용 지팡이	○ 종류 ○ 재료
	9)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
	10) 고령자용 목욕의자	-
	11) 고령자용 위치추적기	-

분류		모델구분
나. 생활	12) 물안경	○ 종류
	13) 반사안전조끼	○ 종류
	14) 스테인레스 수세미	○ 종류
	15) 시각장애이용 지팡이	-
	16) 침대 매트리스	○ 재질
	17) 우산 및 양산	○ 종류
	18) 롤러스케이트	○ 치수 ○ 용도 ○ 재질 ○ 모양
	19) 바퀴달린 운동화	○ 종류
	20) 모터달린 보드	○ 종류
	21) 창문블라인드	-
	22) 휴대용 경보기	-
	23) 접촉성 금속장신구	○ 품목
	24) 쌍꺼풀용 테이프	-
	25) 속눈썹 열 성형기	-

별첨)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

분 류		모델구분
나. 생활	29) 휴대용 사다리	가) 제1부 주택용 사다리 ○ 종류 ○ 재질 ○ 길이
		나) 제2부 도배용 사다리 ○ 종류 ○ 재질 ○ 길이
		다) 제3부 원예용 사다리 ○ 종류 ○ 재질 ○ 길이
	30)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치수 ○ 용도 ○ 재질 ○ 모양	
	31) 키보드 ○ 바퀴 수 ○ 구동방식 ○ 재료 ○ 규격 ○ 모양	
다. 기계금속	자동차용 휴대용 잭	-
라. 섬유	1) 가정용 섬유제품	○ 피부접촉
	2) 양탄자	-
마. 건축	물탱크	-

비고 : 제3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의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첨)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

분류		모델구분
가. 화학	1) 가죽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밀폐 가능 포장 ○ 재밀폐 불가능 포장 ○ 에어로솔 포장 ○ 재개봉 불능 포장 ○ 제거되지 않도록 된 분배기 ○ 상자 또는 쟁반 포장 ○ 분배기 (제거할 수 있음)
	2) 자동차용 워셔액	

비고 : 제4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의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첨) 산업통상자원부령 안전성 인정 대상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FITI시험연구원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시험 검사기관 지정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5-166호 / 2015. 6. 4 시행)

- 0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대한 시험/검사업무가 가능합니다.
- 02** FITI시험연구원은 시험, 검사 및 신고확인증 번호발급 업무를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해드립니다.
- 03**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드립니다.

인증구분	종 목	담당자 연락처
안전인증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이정상 팀장 02-3299-8061 jslee@fidi.re.kr
	어린이용 비버탄총	
안전확인	유아용 섬유제품	박호동 과장 02-3299-8063 hdpark@fidi.re.kr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1부만 해당)	
	완구	
	어린이용 일회용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공급자 적합성확인	어린이용 은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임준희 과장 02-2038-8489 jh.jim@fidi.re.kr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품명복	
	아동용 섬유제품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용 가죽제품	신여주 차장 02-3299-8009 interviews@fidi.re.kr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면봉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강상욱 과장 02-6931-8461 swkang@fidi.re.kr	어린이용 가구	
품목 예시 : 어린이용 서적, 미술용품, 어린이용 운동용품, 악기류, 팬시 용품, 위생용품, 게임기류, 기능성 편리용품, 기타 신제품 등		

- FITI시험연구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관련 안전인증기관 지정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버탄총)
- FITI시험연구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관련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지정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1부만 해당), 완구,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어린이용 은열팩(주머니난로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품명복)

50
YEARS
1965-2015

50년간 베풀어 주신 고객의 **성원**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속성장을 위한 파트너로서, **고객가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CHALLENGE NEXT 50

패션 의류 / 생활 용품 / 산업 제품 / 환경 분석 / 소비자 안전

